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687

발의연월일 : 2022. 7. 27.

발 의 자:이인선・구자근・권명호

김상훈 • 김석기 • 김영식

김용판 · 김정재 · 김희곤

박덕흠 • 백종헌 • 서일준

이만희 • 이명수 • 이채익

임병헌 · 정경희 · 정동만

정우택 · 최승재 의원

(20일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해왔음. 보훈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업무 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,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 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.

이러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,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'처(處)'의 형태로서 보훈예산의 증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

음.

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,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#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국무조정실장·국가보훈처장"을 "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국가보훈부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국가보훈부)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, 제대군인의 보상·보호, 보훈선양,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 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 에 규정된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승계한다.

-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-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은 국가보훈부령으로 본다.
- 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)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 ·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신청·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4조(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 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"국가보훈처", "국가보훈처장", "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" 또는 총리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"국가보훈부", "국가 보훈부장관", "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" 또는 국가보훈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	제13조(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
안제출) ① <u>국무조정실장·국</u>	안제출) ① 국무조정실장
<u>가보훈처장</u> • 인사혁신처장 • 법	
제처장 · 식품의약품안전처장	
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	
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	
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2(국가보훈처) ① 국가유	<u>&lt;삭 제&gt;</u>
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,	
제대군인의 보상・보호 및 보	
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	
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	
국가보훈처를 둔다.	
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	
차장 1명을 두되, 처장과 차장	
은 정무직으로 한다.	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	제26조(행정각부) ①
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	
다.	<b></b>
1. ~ 18. (생 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9. 국가보훈부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 <신 설>

제45조(국가보훈부) 국가보훈부장 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, 제대군인의 보상・ 보호, 보훈선양,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